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1.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신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함.

2. 대상 펀드

운용사	펀드명	설정일	발생일자	수시공시일자
AB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A	2009/10/06	2013/08/31	2013/09/02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1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2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3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4			

3.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내용

-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임.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음.
- 처리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